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환경 보전 관련 남북 간 교류·협력 근거 마련〉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67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환경 보전 관련 남북 간 교류·협력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0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환경 보전 관련 남북 간 교류·협력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과 통일 대비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② (생략) <신설>	제24조(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여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해류의 순환 등 해양의 특성상 특정 국가의 연안에만 피해가 한정되지 않아,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24조¹⁾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와 관련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 남북이 상호협력·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²⁾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유사 입법례로 「산림기본법」의 경우 지난 2019년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산림기본법」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해양수산부, 통일부)의 의견을 보면,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남북 관계 업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할 때, 현행법보다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환경 보전 관련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 마련이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8